

조치종류	조치사유
1. 정정보도문 게재	선거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론보도문 게재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반론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문 게재	경고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서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에 해당하는 선거보도로서 해당 위반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주의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정보도 준수촉구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